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목 차>

1. 양돈농가 방역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 성 자	이름	노규진
	담당부서 (과)	방역정책국		직급	주무관
	국장	박정훈		연락처	044-201-2520
	과장	이동식		이메일	nh5685@korea.kr

2022. 01. 03.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양돈농가 방역시설 등 설치기준 강화		
	2.규제조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10		
	3.위임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01.10 ~ 2022.01.2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발생현황)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월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총 21건*이 발생(올해 5건)했으나, 10.5일(인제) 이후 추가 발생 없음 * '19.9~10월 14건(파주·연천·김포·강화), '20.10월 2건(화천), '21.5~10월 5건(영월·고성·인제·홍천) - (야생멧돼지) 야생멧돼지에서는 '19.10월 첫 발생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및 인근 21개 시군에서 총 1,871건 발생 * 야생멧돼지 ASF 발생: ('21.7월) 55 → (8월) 89 → (9월) 51 → (11월) 76 → (12월) 124 ○ (상황진단) 지난 6월 이후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전년대비 66% 증가(173건→287) - 경기북부→강원북부→강원중·남부로 확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 확산 우려 * 광역울타리 밖 검출(104건) : 가평(6건), 포천(4), 춘천(4), 인제(1), 영월(16), 양양(7), 평창(8), 홍천(9), 정선(43), 횡성(3), 삼척(2), 단양(1) - 단양·제천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북부 양돈 밀집지역*의 위험도가 특히 높고, 전국 양돈농장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여주 92호 173천두, 이천 179호 387천두 등 17개 시군 653호 1,280천두 ○ (추진배경)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 중이나,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전국 모든 양돈농장 방역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 *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		

		- 방역시설 설치과정에서 작업인부와 기자재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바이러스의 돈사 유입 가능성 증가(인접농장 469호 중 185호 공사 중) * ('20.10 화천 발생농장) 모돈사 스톨 교체 작업 시 방역수칙 이행 미흡으로 오염원 유입 추정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은 농장 종사자의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방역시설 설치에도 소극적인 상황 *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경기북부·강원 100% / 경기동부, 충북·경북 북부 66 / 그 외 지역 6 -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원인은 주로 매개체와 사람, 차량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KREI)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건수 중 12건은 차량·사람·매개체,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간 전파로 추정하고 있음 ○ (내용)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야생멧돼지와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와 축산차량, 사람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것임. ○ (제도화 필요성)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지역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그러나 농장 입장에서는 방역시설 설치 등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7.규제내용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멧돼지와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와 축산차량, 사람에 의해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하는 것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서·방충망, ⑥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8. 피규제 집단 및	○ 전국 돼지 사육업자 5,485호('21.12.28. 현재)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 사육농가 494호와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 중 이미

	이해 관계자	설치를 완료한 824호를 제외한 4,167호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돼지 사육업자	4,167호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도입목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또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중점방역관리구내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 (기대효과)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여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 용	편 의	순비 용
		피규제자	75,665.48		75,665.48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일물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 용	편 의	연간균등순비 용
		적용	75,665.48	0	9,150.73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u>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u> (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 나. (생 략)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생 략) (2) 돼지 사육업 <table border="1" data-bbox="178 824 788 2027"> <tr> <td data-bbox="178 824 242 898">소독 시설</td><td data-bbox="242 824 788 898">(가) ~ (마) (생 략)</td></tr> <tr> <td data-bbox="178 898 242 2027">방역 시설</td><td data-bbox="242 898 788 2027"> (가) ~ (나) (생 략)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울타리 시설</u>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u>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td></tr> </table>	소독 시설	(가) ~ (마) (생 략)	방역 시설	(가) ~ (나) (생 략)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울타리 시설</u>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u>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u>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u> (제20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 나.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생 략) (2) 돼지 사육업 <table border="1" data-bbox="823 824 1433 2027"> <tr> <td data-bbox="823 824 887 898">소독 시설</td><td data-bbox="887 824 1433 898">(가) ~ (마) (현행과 같음)</td></tr> <tr> <td data-bbox="823 898 887 2027">방역 시설</td><td data-bbox="887 898 1433 2027">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외부울타리</u>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단서 삭제> 1) <u>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u> 2) <u>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u> 3) <u>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u> 4)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 </td></tr> </table>	소독 시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외부울타리</u>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단서 삭제> 1) <u>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u> 2) <u>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u> 3) <u>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u> 4)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
소독 시설	(가) ~ (마) (생 략)								
방역 시설	(가) ~ (나) (생 략)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울타리 시설</u>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u>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u>								
소독 시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방역 시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u>외부울타리</u>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단서 삭제> 1) <u>외부 울타리는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금속성 소재의 철망 또는 철판 등의 자재로 설치하고, 담장은 콘크리트, 벽돌 등으로 설치할 것</u> 2) <u>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은 지상 1.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주 기둥은 지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면 아래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콘크리트 등을 매립하여 설치할 것</u> 3) <u>방역상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 안내판을 출입문 및 외부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면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것</u> 4) 「 <u>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치할 것. 다만, 차량이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의 진입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내부 울타리는 사육시설 및 사료보관통(사료빈)의 외곽에 설치하되, 차량이 내부 울타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경우에는 외벽을 내부울타리의 일부로 인정하여 해당 구간에는 내부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내부 울타리는 지상 1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료보관통(사료빈)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간 이격거리가 좁아 사육시설과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한해 사육시설과 1.2미터 미만의 거리를 두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내부 울타리의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이 내부 울타리 내로의 진입 없이 액비운송펌프 등을 이용해 자원화시설로부터 액비를 수거·운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마) 방역실은 축산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사육시설 방문자 등 농장 또는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이하 "출입자"라 한다)이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1)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

현행	개정안
(라)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신설>	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2) 외부 울타리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내부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문의 안쪽 경계면에 연결된 구조물로 설치할 것 3) 방역실에는 출입자가 바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둘 것 4)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소독설비를 갖추어 둘 것 (바) 약품, 소형 기자재 및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하기 위해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마호에 따른 방역실 내부에 별도의 물품반입 장소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동별 출입구 앞쪽에 설치할 것 1) 신발 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된 공간으로 설치하되,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2) 출입 시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도록 높이 45센티미터·폭 15센티미터 이상의 차단벽·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 또는 폭 1미터 이상의 발판 등을 전실 내부의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에 설치할 것 3)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의 입구에 신발소독조 또는 소독매트를 갖추어 둘 것 4) 전실 내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에 신발장을 설치하고, 오염구역에는 세척용 솔을 갖추며, 청결구역에는 세척용 솔과 사육시설 내부용 장화를 갖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추어 들 것 5) 전실 내 오염구역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 또는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아) 새, 쥐, 파리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방충망 등 방충시설을 사육시설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공기의 유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에 방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포충등 또는 해충 포집장치 등 방충장비를 구비할 것 (자) 새, 쥐 등 동물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조망을 퇴비사의 환풍기, 환기구, 환기설비 및 배수구 등 새, 쥐 등의 진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할 것 (차)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의 형태로 설치하고,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의 내·외부가 수시로 청소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를 갖추어 둘 것 (카) 견고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여 축의 입식과 출하를 위한 입출하대를 설치하되,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 울타리에 연결되고, 차량이 외부 울타리 내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 울타리에 연결된 구조로 설치할 것 1) 일방 통행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경사로 형태의 배수시설을 갖추는 등 세척과 소독이 용이하도록 설치할 것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발생양상)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19.9월부터 현재 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총 21건*이 발생(올해 5건)했으나, 10.5일(인제) 이후 추가 발생 없음

* '19.9~10월 14건(파주·연천·김포·강화), '20.10월 2건(화천), '21.5~10월 5건(영월·고성·인제·홍천)

- 야생멧돼지에서는 '19.10월 첫 발생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 되면서, 접경지역 및 인근 21개 시군에서 총 1,871건 발생

* 야생멧돼지 ASF 발생 ('21.7월) 55 → (8월) 89 → (9월) 51 → (10월) 33 → (11월) 76 → (12월) 124

- (상황진단) 지난 6월 이후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전년 대비 66% 증가(173건→287)

-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남부로 확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 광역울타리 밖 검출(104건): 가평(6건), 포천(4), 춘천(4), 인제(1), 영월(16), 양양(7), 평창(8), 홍천(9), 정선(43), 횡성(3), 삼척(2), 단양(1)

- 특히,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이 서쪽으로 점차 이동하고 영월·단양 등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처음 발생 후 인근에서 집중 발생

* 영월(김삿갓면, 11.4), 제천(송학면, 11.22), 단양(단성면, 11.19) 첫 발생 후 제천 7, 단양 39건 집중 발생

- 단양·제천에서 꾸준히 양성개체가 확인되어 충주·여주·영주 등 인접지역과 원거리까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 단양·제천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북부 양돈 밀집지역*의 위험도가 특히 높고, 전국 양돈농장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여주 92호 173천두, 이천 179호 387천두 등 17개 시군 653호 1,280천두

- (추진배경)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 중이나, 전국 모든 양돈 농장의 방역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 방역시설 설치과정에서 작업인부와 기자재 출입이 빈번해짐에 따라 바이러스의 돈사 유입 가능성 증가(인접농장 469호 중 185호 공사 중)

* ('20.10 화천 발생농장) 모돈사 스톨 교체 작업 시 방역수칙 이행 미흡으로 오염원 유입 추정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은 농장 종사자의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방역시설 설치에도 소극적인 상황

*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경기북부·강원 100% / 경기동부, 충북·경북 북부 60.4 / 그 외 지역 1.9

-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주로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건수 중 12건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방역시설을 강화하고, 시설 공사·모돈사 등 취약 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및 교육·홍보로 농가의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 (내용)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야생멧돼지,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축산차량, 사람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일반지구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 (제도화 필요성)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9.9월 접경지역에서 첫 발생한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및 인근 21개 시군에서 총 1,871건 발생하고 있고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었으나
 - 최근 서쪽으로도 점차 이동하여 영월·단양 등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처음 발생 후 인근에서 집중 발생하면서 단양·제천에서 꾸준히 양성 개체가 확인되어 충주·여주·영주 등 인접지역과 원거리까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지역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 파주시의 경우 ASF 발생 후부터 지역 안보관광 등 중단
- 반면 농장 입장에서는 방역시설 설치 등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현행 유지
	내용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내용	○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의 돼지 사육업자가 갖추어야할 방역시설 기준 강화
규제대안2	대안명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완화
	내용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을 각 사육업자가 개별 사육시설의 상황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완화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추가설치에 따른 비용 최소화	돼지 사육시설의 차단방역 수준이 낮아 차량, 출입인원, 매개체 등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
규제대안1	돼지 사육업자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시에도 사육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돼지 사육업자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발생
규제대안2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시 돼지 사육시설의 차단방역 관리가 어려워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및 확산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돈협회	'21.10.08. / 한돈협회 / 설명회	필요성에 공감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	의견수렴
	'21.11.18. / 정부청사 / 설명회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	의견수렴
	'21.12.22. / 정부청사 / 회의	세부기준 및 시행 시기 논의	의견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9.9월 접경지역에서 첫 발생한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및 인근 21개 시군에서 총 1,871건 발생하고 있고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었으나
 - 최근 서쪽으로도 점차 이동하여 영월·단양 등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처음 발생 후 인근에서 집중 발생하면서 단양·제천에서 꾸준히 양성개체가 확인되어 충주·여주·영주 등 인접지역과 원거리까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주로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건수 중 12건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가축전염병은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다른 농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식품·외식, 지역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파주시의 경우 ASF 발생 후부터 지역 안보관광 등 중단

- 반면 농장 입장에서는 방역시설 설치 등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화하지 않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돼지 사육시설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역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사업 추진 중

3. 규제목표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남부로 확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므로

- 단양·제천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북부 양돈 밀집지역*의 위험도가 특히 높고, 이후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 농장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여주 92호 173천두, 이천 179호 387천두 등 17개 시군 653호 1,280천두

-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여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가 주로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발생함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도 유입원인의 각각 54.3%*, 78.9%**가 출입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5년, 건국대학교)

** 2014-2016 구제역 백서(정책연구보고서, 20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1건의 사육돼지 발생 건수 중 12건은 매개체·차량·사람에 의해 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5건은 축산차량에 의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 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남부로 확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고

- 단양·제천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북부 양돈 밀집지역*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이후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 농장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여주 92호 173천두, 이천 179호 387천두 등 17개 시군 653호 1,280천두

- 양돈농장의 출입차량, 인원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 것은
- 농가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양돈산업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단으로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식품·외식, 지역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함

* 파주시의 경우 ASF 발생 후부터 지역 안보관광 등 중단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 축산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므로 비례적으로도 타당한 수단으로 판단됨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광범위한 온도 및 pH에서 안정하고, 혈청에서 18개월, 냉장고에서 6년, 식육 제품내 3~6개월간 감염성 유지

- 또한, 양돈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농가의 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912억원)사업으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 기존 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국가표준(KS 등) 및 국제기준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차량, 인원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축산 농가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가격과 생산 또는 품질과 상품, 서비스 다양성을 제한하지 않아 경쟁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차량, 인원 및 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한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기준을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만 특정된 규제는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나 신산업 분야의 시장기능에 개입하는 등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로 축산업과 가축전염병이 존재하는 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몰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미국의 축산농가 차단방역 사례>

- 상업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생산자는 ①출입자, ②차량(운전자)·장비, ③축사, ④사료·물, ⑤취·해충, ⑥배설물·폐사체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 조치*를 해야함

* 생물학적 안전 조치 : 가축전염병이 인간, 동물, 장비, 차량 등을 통해 농장이나, 가금류 사육시설 등에 전염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함

- (주요 내용) 생물학적 안전 조치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차량, 동물·가축, 동물(가축포함)의 사체, 분뇨 및 야생 동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 미국의 방역시설 및 관리수칙

- 출입구 폐쇄(간판 설치) : 평시 잠금상태 유지
- 방역선 진입시 방역출입시설(전실)을 반드시 통과 : 샤워 및 환복
- 완충지역 설정 및 준수 : 돈사 주변의 외부통제 경계역할 수행

* 완충지역 진입 전 차량과 장비 세척·소독(차량이 완충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충지역을 설정하며 설정방법은 울타리, 간판, 말뚝, 깃발, 로프 등 다양함)

- 울타리 설치
- 주차장 : 농장 외부에 설치

- ① 가금 사육시설에 대한 외부접근 차단
- ② 가금 사육시설을 '청결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 울타리로 분리
- ③ 사육관리자만 축사내 출입(사육관리자는 조류가 있는 행사 참석 금지)
- ④ 사육시설 방문자는 샤워 후 환복·신발 갈아신기(덧신, 신발소독 포함)
- ⑤ 허가·등록된 사육대상 가금이 아닌 애완용 조류 등을 보유한 경우 가금 사육시설에 접근 및 접촉금지
- ⑥ 야생 조류의 가금 접촉 금지 및 방사 사육 금지
- ⑦ 사육시설의 청결유지
- ⑧ 가금 사육시설 출입자 전용 의복 및 신발을 구비하고 출입시 환복·신발 갈아신기
- ⑨ 가금 사육시설 출입 전 비누와 물로 손 세척
- ⑩ 사료·물을 매일 교체
- ⑪ 가금 사육에 사용되는 도구의 철저한 세척·소독
- ⑫ 가금의 폐사체는 소각·매몰 처리
- ⑬ 차량·장비 및 사육시설의 설비 등의 철저한 세척 소독
- ⑭ 새로 입식한 가금의 30일간 격리사육
- ⑮ 가금의 성장 단계별, 품종간 혼합사육 금지

- ⑯ 가금 사육시설의 장비·도구 등을 타 사육시설 및 농장과 공유 금지
- ⑰ 목제 깔판, 난좌 등 구멍이 많은 자재 등의 공유 금지
- ⑱ 사육 중인 가금의 임상관찰 철저 및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일본의 축산농가 차단방역 사례>

- 일본은 BSE 발생('01)을 계기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사양 위생관리기준」을 제정·운용('04)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 및 보완 실시('11년부터 축종별로 기준을 분리)
- (주요 내용) 방역 시설·장비 설치(Hardware), 행동지침(Software) 등 가축사육업자가 사육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 규정

① 장비·시설

- 1) 위생관리구역 설정, 2) 출입구·사육장 부근 소독시설 설치, 3) 위생관리 구역 전용의복 및 신발 비치, 4) 야생동물 침입방지 그물망 등 설치 등

② 행동지침

- 1) 가축방역 최신정보 파악, 2) 위생관리구역 설정·병원체 유입 방지, 3) 가금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시 조치, 4) 매물 등 준비, 5) 기록 확보 등

③ 사양위생관리기준

구분	세부항목
I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정보 파악 등	1 가축방역에 관한 최신 정보 파악 등
II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2 위생관리구역의 설정
III 위생관리 구역에 병원체 유입 방지	3 위생관리구역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 제한
	4 위생관리구역 출입차량 소독
	5 위생관리구역 출입자 소독
	6 위생관리지역 전용의복·신발 비치
	7 축산 관계시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위생관리구역에 출입 할 때의 조치
	8 다른 축산 관계시설 등에서 사용한 물품 등을 위생관리구역 반입시의 조치
	9 해외사용 의복 등을 위생관리구역 반입시 조치
IV 야생동물으로 인한 병원체 유입 방지	10 급이·급수시설 통한 야생 동물 배설물 혼입 방지
	11 음용수 소독
	12 그물망 등 설치, 점검 및 수리
	13 쥐 및 해충의 구제
V 위생관리구역의 위생 확보	14 정기적 청소 또는 소독
	15 빈 사육장 청소 및 소독
	16 과밀 사육 방지
VI 가금의 건강상태 관찰 및 이상 확인시 조치	17 특정 증상 확인 조기 신고/출하/이동 정지
	18 특정 증상 이외 확인시 출하/이동 정지
	19 날마다 건강 관찰

	20 가금 반입시 건강 관찰 등
	21 가금류의 출하 또는 이동시의 건강 관찰
VII 매몰 등 준비	22 매몰 등 준비
VIII 기록 확보	23 감염 경로 확인을 위한 기록 확보
IX 대규모 농장 추가 조치	24 의사 배치
	25 신고 규칙의 작성

○ 타법사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고 있음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찰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

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5,665.4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5,665.48		75,665.4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75,665.48		75,665.48
기업순비용		75,665.48	연간균등순비용	9,150.73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남부로 확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

이 우려되고

- 단양·제천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북부 양돈 밀집지역*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이후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 농장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여주 92호 173천두, 이천 179호 387천두 등 17개 시군 653호 1,280천두

- 특히, 시설출입차량·사람 및 야생동물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양돈농장의 방역시설 강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예방하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에 대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고
- 특히, 국가의 보조사업*을 통해 농가의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에 대한 순응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10)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도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므로 돼지 사육시설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관리·감독 등 행정적 집행에는 문제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 가축 사육농가의 방역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적 집행에 문제 없음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9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 중(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9. 9. 16.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21건*이 발생(올해 5건)했으나, 10.5일(인제) 이후 추가 발생 없음
 - * '19.9~10월 14건(파주·연천·김포·강화), '20.10월 2건(화천), '21.5~10월 5건(영월·고성·인제·홍천)
- 야생멧돼지에서는 '19.10월 첫 발생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되면서, 접경지역 및 인근 21개 시군에서 총 1,871건 발생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은 경기 북부 → 강원 북부 → 강원 중·남부로 확산되고 있으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 확산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를 통해 기존 경기·강원 중점방역관리 지구 이외 지역의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권고
 - * 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은 농장 종사자의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방역시설 설치에도 소극적인 상황
 - *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경기북부·강원 100% / 경기동부, 충북·경북 북부 66 / 그 외 지역 6

2. 향후 평가계획

-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여부,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오염원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
- 점검 결과 방역시설 미흡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 주요 방역시설*에 대한 미흡 사항 미보완 시 사육제한 등 엄정 조치
 - * 농장의 전실·방역실·입출하대·외부울타리 등

3. 종합결론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예측이 어렵고, 발생할 경우 대규모 살처분, 이동제한, 소독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야기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발생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낙농, 육우, 양돈 산업의 생산액 10% 감소시 생산유발액 감소 2조 3,849억원, 부가가치 감소 5,608억원, 고용유발 감소 29,487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농촌경제연구원)

- 특히, 타국의 발생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실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장기간 근절되지 못하고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 스페인·포르투갈 : 완전 근절에 30년 이상 소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등 동유럽 10개 국가 : 2007년 ~ 현재 지속발생 중

-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이 경기 북부→강원 북부→강원 중·남부로 확산 추세이며, 울타리 밖 가평·홍천·평창·정선·단양·제천에서도 검출되었으며,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

- 단양·제천에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북부 양돈 밀집지역*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이후 지속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전국 양돈 농장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여주 92호 173천두, 이천 179호 387천두 등 17개 시군 653호 1,280천두

- 특히, 시설출입차량·사람 및 야생동물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 전국 모든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돼지 사육 시설의 차량·인원 및 매개체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한 것은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 제고 등 전체 양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75,665.48		75,665.4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75,665.48		75,665.48
기업순비용		75,665.48	연간균등순비용	9,150.73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돼지 사육업자					
활동제목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비용항목	설비					
비용	75,665,485,78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구매비용(원)X연간 구매 횟수X피규제자 수X자부담율 (21960000*1*4167*0.1)					
근거설명	1) 구매비용					
	시 설 명	단가 (천원)	단위	소요	총비용 (천원)	견적비용
	총 소요액				21,960	
	1. 외부울타리	25	m	-	-	50,600원/2m
	2. 내부울타리	25	m	88	2,200	50,600원/2m
	3. 방역실	6,200	개	1	6,200	6,200천원 (동진BLS 제공)
	4. 물품반입시설	-	개	-	-	-
	5. 전실	3,000	개	4	9,000	3,000천원 (지유테크 제공)
	6. 방조방서방충망	1	조	2	60	30천원/20×7 m
	7.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4,500	개	1	4,500	4,500천원 (한울공조냉 동 제공)
	8. 입출하대	-	개	-	-	-



○ 사육시설의 규모 : 돼지 평균 사육두수는 1,800두 수준(가축동향, 통계청, '21.6월 기준).으로 농협의 축사 표준설계도(3,927두 사육, 연면적 4,600㎡)의 사육두수와 비교하여 45% 수준으로 외부울타리는 농협 축사 표준설계도의 면적 기준 45%인 2,070㎡를 적용, 내부울타리는 건폐율*을 감안하여 외부울타리의 50% 수준 적용

* 농업지역에 위치한 가축사육업의 건폐율은 20%

○ 강화된 방역시설 중 기존에 시설구비 의무가 있었던 외부울타리, 물품반입시설은 설치비용 산정 대상에서 제외

2) 피규제자 수 : 전국 돼지 사육업자 5,485호('21.12.31. 현재, 휴폐업 제외 실제 운영 중인 농가 수) 중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한 1,318*호를 제외한 4,167호

* 중점방역관리지구 494호, 인접지역 311호, 그 외 지역 513호

3) 피규제자 부담율 : 피규제자 부담률은 국가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경우로 산정(자부담 10%)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4) 축사시설현대화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 현황

○ 축사시설현대화('21년 기준 1,116억원)의 내역사업인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228억원)으로 지원(보조율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과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0,500	12,000	22,800	

II.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 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및 돼지 사육농가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지원 항목</th></tr> </thead> <tbody> <tr> <td>(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td><td>·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td></tr> <tr> <td>(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td><td>· 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td></tr> </tbody> </table>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 분	지원 항목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구 분	지원 항목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CCTV, 소독 및 세척 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보관시설, 방충시설, 퇴비사·돈사 방조망, 물품반입시설,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CCTV, 세척·시설·장비(차량, 대인, 축사 내·외부), 야생조류 퇴치기 등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피규제 기업·소상공인(농가)
활동제목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편익항목	방역시설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KREI)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KREI)
--	---

②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축산관계업자
활동제 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 (201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약 2,880억원 - 가금의 생산유발효과는 2.33으로 가금 생산액이 1원 감소하면 연관산업 생산액은 2.33원 감소함 -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55, 취업 유발계수는 10억 원당

	21.9명, 고용 유발계수는 5.4명으로 부가가치 감소액은 1,584억 원, 고용 인력은 7,863명이 감소할 것으로 계측 - 가금산업 피해로 인해 연관산업의 생산액이 3,83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금산업과 연관산업을 합쳐서 6,711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근거] ○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소비자)
활동제목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편익항목	방역시설의 기준 강화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피해)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 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 - (간접피해)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 ○ (2010년 11월, 구제역) 살처분 보상, 방역비, 수매,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 재정지출액은 3조 391억 - 매몰에 의한 사육두수 감소율은 낙농 8.46%, 한육우 3.92%, 양돈 33.57% - (산업연관 분석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 1,46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9,876억원,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만 9,425명 [근거] ○ 축산 방역체계 개선방안(정책연구보고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I 방역 체계 개선 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